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에 「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승강기산업 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,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·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2명),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(6급 1명)은 증원하되, 1명(4급 1명)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‘별정직공무원’에서 ‘전문임기제공무원’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2항 후단 중 “114명”을 “11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643”을 “1,64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8”을 “7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7”을 “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00”을 “1,606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(총경 포함) “1,531”을 “1,537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생 략)	제59조(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114명</u> 을 상 한으로 하고, 3급 또는 4급 공무 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 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 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 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11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43</u>	<u>1,648</u>	+5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8</u>	<u>7</u>	-1
·	·	·	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	<u>7</u>	<u>6</u>	-1
일반직 계	<u>1,600</u>	<u>1,606</u>	+6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(충경 포함)	<u>1,531</u>	<u>1,537</u>	+6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7